

# 심 사 보 고 서

2009. 7. 14.

행정위원회

## 1. 審 査 經 過

가. 제출일자 : 2009년 6월 23일

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09년 7월 1일 회부

라. 상정일자 : 제146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(2009. 7. 3) 상정 의결

## 2. 提 案 說 明 的 要 旨 ( 제 案 說 明 者 : 행 정 국 장 송 요 출 )

### 가. 제안이유

- 2010년 고교선택제에 대비하여 선진화된 교육환경 조성 및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하게 급증하는 지역주민의 교육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보조기준액을 확대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골자

- 보조기준액을 “자치구세의 5% 범위내” 에서 “해당연도 예산액의 범위내” 로 확대 (안 제3조)
- 법제처의 “알기 쉬운 법령만들기” 용어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

### 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(專門委員 권오운)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와 「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근거하여 우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내용 중 보조기준액을 변화하는 교육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2010년 고교선택제에 대비하여 교육환경 선진화와 우수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함이고,

보조기준액의 범위 등 확대 조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타구 보조기준액 지원 사례와 우리구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, 교육경비 지원시 학교시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폭넓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, 조례 내용 중 일부 용어를 법제처에서 시달된 “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” 정비기준에 의거 정비하였다고 사료됨.

### 4. 審査結課 : 原案可決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17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9. 6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2010년 고교선택제에 대비하여 선진화된 교육환경 조성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하게 급증하는 지역주민의 교육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보조기준액을 확대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자치구가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관내 각급학교 및 교육청으로부터 매년 증액지원을 요구하는 추세인바, 보조기준액을 “자치구세의 5% 범위내” 에서 “해당연도 예산액의 범위내” 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 (안 제3조)

나.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용어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(법률제8852호)

2) 중등교육법 제2조(법률제8917호)

3) 유아교육법 제26조(법률제8852호)

4)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제20464호)

나. 예산조치 :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필요없음

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2) 입법예고(2009. 5.14 ~ 2009. 6. 3) 결과 : 의견없음

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사무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, 제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“소요되는”을 “**필요한**”으로 한다.

제3조 본문 중 “자치구세의 5% 범위내에서”를 “**해당연도 예산액의 범위내에서**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4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**제4조에 따른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**제1항에 따라**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통할”을 “**총괄**”로 한다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제6항과 「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」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영등포구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(이하 "각급 학교"라 한다)의 교육에 <u>소요되는</u>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평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<b>제1조(목적)</b> _____            _____            _____            _____            _____            _____  <u>필요한</u> _____            _____            _____.</p>
<p><b>제2조(보조사업의 범위)</b>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<u>소요되는</u>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(이하 "보조사업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	<p><b>제2조(보조사업의 범위)</b> _____            _____ <u>필요한</u> _____            _____            _____            _____            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3조(보조기준액의 제한)</b> 구청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<u>자치구세의 5% 범위 내에서</u>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국 시비(구비 분담금 포함)로 지원하는 경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.</p>	<p><b>제3조(보조기준액의 제한)</b> _____            _____  <u>해당연도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</u> _____            _____            _____            _____.</p>

현행	개정안
<p><b>제5조(보조금의 교부결정)</b> ①구청장은 <b>제4조의 규정에 의한</b>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②구청장은 <b>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</b> 보조금을 교부키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,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.</p>	<p><b>제5조(보조금의 교부결정)</b> ① <del>-----</del> <b>제4조에 따른</b>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del>-----</del> <b>제1항에 따라</b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<b>제8조(위원장 등의 임무)</b>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<b>통할한다</b>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<b>제8조(위원장 등의 임무)</b> ① ----- ----- <b>총괄한다.</b>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